

문화권 개념 정립과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보장의 필요성

2005년 3월 11일(금) 오후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문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 토론회 순서 •

사회 :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발제1.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

: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발제2. 세계를 향한 고독한 외침 : 이것이 기초예술이다

: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토론

: 도지호 (김천대학교 회화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조직실장)

: 장시기 (동국대 영문과 교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집행위원)

: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 자료집 목차 •

발제문1.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

: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1

발제문2. 세계를 향한 고독한 외침 : 이것이 기초예술이다

: 김형수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총장)

15

참고자료1. 문화적 권리 관련 해외 선언 및 조약

22

참고자료2.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31

발제문 1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¹⁾

강내희 / 중앙대학교 영문학과,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1. 문화적 권리에 관한 경과보고

“문화적 권리”는 한국인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개념인 듯싶다. 이 권리의 내용이나 함의, 그 와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관심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적으며, 문화적 권리가 세인의 관심을 끌며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과문한 탓일까, 한국에서 문화적 권리만 주제로 삼아서 토론을 벌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라는 생각이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낮은 것은 물론 한국의 사정만은 아니다. 10년 전 필리벡은 문화적 권리를 “인권 가족의 신데렐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²⁾ 신데렐라가 계모와 언니들에 의해

1) 7년 전에 발표한 필자의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를 개작한 글이다. 원문의 발표 시기가 오래 되긴 했으나 아직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토론회에 활용한다.

2) G. Filibek, Interventions Concerning Theme 1.1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Cultural Rights). Council of Europe, 8th Annual International Colloquy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95(Budapest), p. 75.

뒷방으로 내몰려 지내듯 문화적 권리 역시 다른 인권에 비해 늘 부차적인 위치라는 지적이 었다. 니에크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근래에 국제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으나 법률적 집행가능성의 견지에서 보면 그중 문화적 권리가 가장 덜 빌랄한 범주임을 밝힌 적이 있다.³⁾ 그리고 이런 판단은 “문화적 권리”는 논의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은 인권 범주로서 그에 대한 만족스런 정의와 법률적 규약이 없다”고 하는, 1996년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에 대한 유럽 특별조사단(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이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에 제출한 □□주변에서 안으로□□(*In from the Margins*)라는 보고서에도 나온다.⁴⁾ 이런 지적들이 나온 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는 얼마나 풍부해졌을까?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에서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어 2001년에 이르면 문화적 권리를 중요한 내용으로 담은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이 채택되는 등 국제적으로는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가 제법 많이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늘의 토론회가 문화적 권리를 주제로 삼는 최초라면 국내의 상황은 10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셈이다.⁵⁾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정치나 경제 등 비중이 비슷한 다른 관심사에 비해 문화를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왔다. 남북전쟁을 겪어 먹고살기도 어려웠던 50년대, 경제개발이 일어나던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는 동안 문화는 늘 경제의 깃발에 가려져 아예 보이지 않거나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일부 소수에게나 허용되는 것일 뿐이었다.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80년대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때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이 목표였고, 이 결과 문화는 경제의 뒷전으로 내몰리곤 했다. 정치와의 관계에서도 문화의 위상은 낮았다.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를 장악한 것은 정치였다. 사회의 3대 충위라 할 정치, 경제, 문화의 관계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문화와 경제의 종속으로 특징지어진다.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했을 때도 정치가 경제와 문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가 그래도 정치의 목표로 설정되었다면, 문화는 용도를

Halina Niec, “Cultural Rights: At the End of the 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에서 재인용.

3) 같은 글.

4) 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from the Margins: A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Culture and Development in Europe*, 1996, 8.4.9.

5) 문화적 권리와 관련한 종합적 논의는 문화연대 산하 문화사회연구소가 2004년 국가인권 위원회의 용역보고서로 만든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이 거의 유일하다.

인정받을 때라도 정치의 ‘시녀’로 전락했을 뿐이다. 정치적 노력이 대부분 경제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화적 노력이 쓸데없는 일로 치부된 결과다. 물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화로의 전환’이 일어나 문화의 위상이 높아진 면도 없지는 않다. 상품 판촉을 위한 디자인 혁신 등 상품생산에서 미학적 고려가 중요해지고, 광고와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여가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문화산업에 기반을 둔 대중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가수, TV 텔런트, 코미디언 등 대중예술인이 인기작종으로 부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며, 연예인들 일부가 정치에 입문하기 시작한 것도 문화가 상대적 중요성을 획득했다는 징후일 것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문화가 정치의 파트너라는 인식이나, 문화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는 인식도 생겨났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화를 경제의 수단으로 보거나 정치의 활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를 그 자체로 중요시한 것은 아니다.

문화와 문화적 권리를 개념적으로 규명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사실 문화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문화와 문화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하는지 근거를 대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문화적 권리를 다른 권리와 구분하는 기준이 될 문화 자체가 규정하기 어렵다면 문화적 권리를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문화적 권리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리기도 어려운 일이 된다. 사회적 쟁점이 되려면 대중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개념적 명료성을 지녀야 하는데 문화적 권리는 그런 명료성을 결여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권리가 사회적 관심의 바깥에 놓이게 된 데에는 한국이 처한 국제적 상황도 적잖은 작용을 했을 것이다. 알다시피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서냉전 구도에서 자본주의 진영에 속하게 되었고, 이 결과 유엔이 인정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과는 다른 관점과 입장을 드러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후 「선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과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이 발표되었을 때 한국은 A 규약에의 가입은 보류한 채 B 규약에만 가입했고, 이 결과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행보를 (현실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1년에 이르러 A 규약에 가입할 때까지) 지속해왔다. 그뿐 아니라 드디어 A 규약에 가입한 뒤 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와 보고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어닥치고 한국 역시 그 풍랑을 겪게 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급속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문화산업론'과 같은, 문화를 경제의 하위 범주로만 보는 입장이 지배적 경향으로 대두함에 따라 문화와 문화적 권리에 관한 외면과 무관심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문화와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듯하다. 한국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형식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안을 겪고는 있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문제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획득이 한국인 대부분의 삶의 질을 결코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사회발전의 길, 흔히 압축적 근대화라고 부르는 발전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정치경제의 발전만으로는 삶의 여유나 멋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닐까? 새로운 사회발전의 모색이 따라서 시급하다 하겠는데, 이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 모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압축적 근대화는 우리 모두를 이윤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서로간의 아귀다툼으로 몰아넣었다. 우리가 삶의 여유, 호혜정신을 대부분 잃어버린 것은 "경제적 이성"의 노예가 되어 돈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치가 없다고 팽개치고, 돈이 되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바로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바꾸는 일은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삶의 거친 결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문화적 접근, 즉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을 요구한다. 새로운 문화를 가꾸고, 더 나은 문화를 추구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는 일이 그동안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사회 발전의 지배적 모델로 삼은 탓에 야기된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오늘의 토론은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문화적 권리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 권리를 신장하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려면 그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할 방도, 예컨대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장치를 도입하는 일이 어렵다면 사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국가가 어떤 방식, 어떤 종류의 운동과 노력, 조치 등을 취해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 유감이지만 이 발제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작업을 제안할 정도의 논의를 펼칠 수는 없다.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내 논의가 별로 진척되지 못한 데다가 나 자신이 주제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갖추지 못한 소치다. 이 발제의 주된 목적은 따라서 문화적 권리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데 국한된다. 문화적 권리의 개념을 규명하고, 문화적 권리가 인권 가운데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야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과 그것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좀더 분명히 알 것 같기 때문이다.

2 "문화"를 보는 관점들

영국의 문화이론가 레이먼드 월리엄스에 의하면 "문화는 정의하기가 가장 어려운 영어 단어 두 세 개 가운데 하나"다.⁶⁾ "문화"는 그만큼 개념 규정이 어려운 용어라는 것인데, 하지만 그래도 "문화"라는 용어가 통상 사용되고 있고, 그 용법의 역사가 있는 만큼 통념에 따른 "문화" 개념을 추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잠깐 문화 정의의 어려움을 지적한 월리엄스 자신의 정의를 살펴보면, "문화"는 전통적으로 1) 일반적인 지적, 정신적, 미학적 성장 과정, 2) 특정한 삶의 방식, 3) 지적, 특히 예술적 작품 및 실천들, 4) 상징적 체계 또는 의미화 작용 관련 실천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정의 1)에서 문화는 "창조성" 또는 인간적 발전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의 발달"이라는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에서 "문화"는 인간이 이룩한 성취의 한 형태나 수준을 의미하며, 이런 정의는 오늘날 많은 사회의 문화정책에서 전제되고 있다.(나중에 언급 할 유네스코의 정책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에서 제시되는 문화 개념이 특히 그렇다). 그런데 문화를 이처럼 창조성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화가 동일한 수준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런 질문은 사실 역사가 아주 오래 된 것으로서 문화를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의 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화의 가치나 지위는 어떤 수준의 문명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판단된다. 이런 문명론적 관점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문화"는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의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종족이나 민족은 문화를 결여한 "야만"으로 규정될 것이다. 동아시아권이 화이론(華夷論)으로 사람과 오랑캐를 구분한 것, 고대 그리스가 이웃 민족들을 말을 할 줄 모른다면 "야민"이라 부른 것, 19세기 제국주의 세력이 제3세계 민족 다수를 "역사 없는 민족"이라 규정한 것 등이 문화를 이렇게 보는 태도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문명론" 전통을 비판하는 대안적 관점도 가능하다. 19세기에 헤르더가 제출한 인류학적 접근법이 한 예로서, 여기서 "문화"는 복수적으로, 그리고 차이의 관점에서 인식된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회는 그 나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데, 남의 문화를 야만적이라 규정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관점이다. (위에서 월리엄스가 제시한 4가지 문화 정의 중 1)과 3)은 문명론의 관점, 2)와 4)는 인류학적 관점이라 할 수 있

6) Raymond Williams, *Key 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 Press, 1976, p. 80.

을 것이다.)

다른 한편 문화는 정치나 경제, 기술 등과는 구분되는 사회의 한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정치가 권력관계와, 또 경제가 생산 또는 이익 관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문화는 삶의 의미나 가치, 또는 형태와 관련을 가진다. 이 말은 문화가 정치나 경제 또는 정치경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만은 아닌 그 나름의 자율성을 지닌 차원이면서 동시에 지배 및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이 경우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이지만 동시에 지배와 저항이 일어나는 장이다. 예컨대 “의미화실천”(signifying practices)이나 심미적 활동의 영역으로서 한 사회의 대중매체의 작동은 사회 구성원의 해방과 지배에 영향을 미친다. 저녁 9시 텔레비전 방송 뉴스 진행자가 사건 보도를 하며 “상식”에 따른, 혹은 정세상 지배적인 관점에 따른 발언을 할 때 사회적 지배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한 예다. 이는 의미화실천인 문화가 사회의 지배관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이 “비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가 정치경제적인 규정으로부터 독립된 일정한 자율성을 지닌다는 사실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 문화가 사회적 지배와 관련하는 방식은 주로 의미생산 또는 욕망생산을 둘러싼 투쟁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이 의미와 욕망을 둘러싼 투쟁은 이익을 둘러싼 투쟁과 일정하게 차이를 두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좀더 발전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문화는 인간이 지닌 종적인 특징 혹은 능력, 즉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능력, 특히 창조성의 능력이요, 그런 창조적 능력의 발현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문화적 능력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능력이며, 영국의 경험론적 문화연구 전통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문화주의 관점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문화를 인간의 능력으로 보긴 하되,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으로만 인정하는 입장이 있다. 이 경우 문화는 한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나 세계적 차원에서는 몇몇 민족 또는 국가에서만 그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문화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인종차별주의와 같이 지단별을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한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를 “고급문화” 중심으로 사고하는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문화가 지닌 무비판성, 저질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예술 중심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분과적(disciplinary)이다. 그러나 오늘은 반 엘리트주의와 반 분과적 태도로 고급문화주의와는 구분되는 문화 이해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비판적 문화연구가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른 한편 문화를 소수 문명의 성취로 보는 것은 문화제국주의에 빠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하고 인류의 동등한 평화적 공존을 바라는 사람들이 문화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세째,

문화를 지배문화라는 측면에서, 지배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 있다. 이것은 문화를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장으로 보는 관점인데,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의 영향과 함께 안토니오 그람시의 혜계모니론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 넷째, 이데올로기론처럼 문화를 지배 현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 지배를 “생산적 권리”的 관점에서, 특히 욕망과 쾌락의 생산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관점이 있다. 최근에 국내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푸코의 권리이론이 그 이론적 기반을 이루는 관점이다.

3. 문화적 권리를 보는 네 가지 관점

문화에서 인간 권리의 진작과 탄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양상을 띠는가?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위의 논의에 비추어 보면 문화를 보는 관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조성을 중시하는 문화주의적 관점, 이데올로기론의 관점, 권리/욕망이론의 관점이 그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일부 반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문화는 인간 본연의 창조적 능력 또는 그 발현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문화를 인간 본연의 능력이 어떤 완벽한 수준에서 성취된 것, 인간적 가치가 가장 잘 구현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급문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를 인류 보편의 역능으로 보는 식이다. 따라서 문화주의 관점 안에는 상반된 이런 두 시각에 따라서 엘리트주의적 접근과 문화민주주의 접근이 공존한다. 엘리트주의는 배타적 엘리트주의와 시혜적 엘리트주의로 나뉠 수 있다. 전자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문화를 독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생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독점 형태를 떤다면, 후자의 경우는 소수가 성취한 문화를 대중에게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등장하는 문화정책은 “문화 민주화” 정책인데, 고급문화의 대중적 분배 혹은 고급문화에 대한 대중 접근권의 확대라는 형태를 띤다. 다른 한편 문화를 인간본연의 창조성이라고 보더라도 누구나 문화적 창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민주주의라는 관점으로 문화정책을 펼친다. 유네스코의 기본적 관점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관점은 문화는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가치라기보다는 일상적이며 평범한 것으로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본다. 여기서 문화는 개인과 집단이 지닌 표현 능력과도 같은 누구라도 자신의 욕구를 억압받지 않고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적 관점이 들어

있다. 이 두 상반된 태도를 모두 문화주의라고 간주할 수 있는 까닭은 문화를 귀중하게 여기는 태도, 즉 문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데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문화주의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의 관점이 되는 것은 고급한 것이든 아니든 문화에 대한 접근권과 문화적 생활 또는 활동에 대한 참여권을 가지는가 않는가 여부이다. 문화는 여기서 소유 혹은 향유의 대상이며 문화적 권리는 소유나 향유의 기회 획득 여부의 문제가 된다.

둘째, 이데올로기론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는 지배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여기서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 결백한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지배의 중요한 기제이거나 사회적 모순이 가동되고 사회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이다. 이데올로기론에서 이 저항은 의미생산을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의미는 개인의 주체화(subjectific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되는데, “주체가 된” 개인은 사회에서 특정한 의미체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존재로 기능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라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주체화는 세 가지 다른 양상을 갖게 된다. 지배체제에 동화하는 동일시,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듯하지만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반동일시, 지배체제에 개입하여 그것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동일시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론 관점에서 볼 때 관건은 문화를 통해서 가동되는 지배에 대처하는 비판적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동일시와 반동일시가 아닌 역동일시를 지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지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사상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론에서 볼 때 문화는 지배의 문제인 만큼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지배의 재생산을 강요하는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사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사고는 사상의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존하는 체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체제로 인정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면 사상의 자유는 문화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를 욕망 또는 쾌락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 문화에 대한 ‘권력이론’의 접근이 나온다.⁷⁾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본 문화가 과학적 자유와 인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본 문화는 신체적 반응의 문제이다. 문화적 활동, 특히 예술적 활동에서는 반드시 신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예술적 정동(affect)은 신체를 관통하며 특히 쾌와 불쾌의

7)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론”은 “권력의 미시정치학”을 주장한 푸코와 푸코의 권력이론과 일정하게 구분되는 “욕망의 생산성”을 주장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입장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다.

감정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미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이해관계(착취 문제, 또는 생산관계) 문제에, 대변과 재현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면 권력이론은 욕망과 쾌락의 직접적 작용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이때 문화는 욕망이나 쾌락 생산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느냐의 문제이며, 여기서 일어나는 운동은 기존의 배치에 머물러 있느냐, 새로운 배치로 전환되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때 중요한 문화적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닐까 싶다. 신체적 반응은 사상의 자유보다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와 전적으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의 현존 국가보안법이 주로 문제삼는 것은 많은 경우 “사상 문제”이다. 좌파적 관점을 표현한 것으로 사찰 대상이 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입건되어 구속되는 경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이해관계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즉 어느 편을 지지하고 어느 편 이익을 대변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 표현의 방식에 고유한 쟁점도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세간의 관심을 끈 「빨간 마후라」 사건, 이현세의 만화 「천국의 신화」, 좀더 최근의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 홈페이지 게재 사건 등은 이를 ‘작품들’을 포르노그래피로 규정함으로써 표현 자체에 검열을 가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여기서 관건은 어떤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문제보다는 특정한 표현이 쾌나 불쾌를 야기하느냐, 독자나 시청자의 욕망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이다.

넷째, 위 3가지 관점과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차원의 문화적 권리 문제가 있다. 문화적 생존권이 그것이다. 이 생존권과 함께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문화적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개별 문화권(文化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신의 문화가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문화적 생존권은 특히 약소문화, 소수문화에 관건이 되는 권리이다. 위에서 문화에 대한 네 번째 관점으로 차별주의 문화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문화를 고급문화 중심으로 보거나, 발달한 사회, 국가, 문명권의 특권으로 볼 경우 문화는 서로 다른 사회들을 차별하는 근거가 된다. 우월하거나 고급하다고 자처하는 문화와 그렇지 않다고 취급되는 문화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과 투쟁이 발생한다. 전자는 문화제국주의로 후자를 지배하려 하고, 후자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 스크린쿼터를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에서도 기본적으로 영화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문화의 생존권 또는 주권이 문제가 되었고,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세계 영화시장을 평정하려는 제국주의적 야욕이 그 원인이었다. 세계화가 고도로 진행된 오늘 문화는 더 이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민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로 국

민국가의 시장개방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화의 교류는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문화분야의 자본 침투 현상이 심화하면서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문화시장의 침투는 그중 가장 큰 문제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적 생존권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져만 가는 문화적 권리가 아닐까 싶다. 문화적 생존권은 문화적 자결권 또는 주권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문화적 자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문화적 생존권은 보장받기 어렵다. 스크린 쿼터제 철폐 여부를 둘러싸고 국내 영화인들과 사회운동단체가 적극 나선 것도 이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외국 문화산업자본의 한국영화시장 침투를 맞아 우리 문화의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우리문화의 진로에 대해 우리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4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

지금까지 개념적 이해를 시도하였지만 문화적 권리가 이상의 논의로써 제대로 판명되었다는 생각은 아직 들지 않는다. 이런 한계는 문화적 권리 논의의 일천함에서 비롯되지만 좀 더 현실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 개념적 지형도를 대충 맞게 그려낼 수 있다 해도 온전한 논의가 전개되려면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토대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한국에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한심하다 할 정도로 낫다. 이는 정부조직 구도에서 문화부문의 위상이 매우 낮은 데서 그대로 드러난다. 프랑스에서는 문화부의 정부 내 서열이 정권에 따라 1위가 될 때도 있다지만 한국에서는 문화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낫다. 정부의 문화부처가 문민정부 시절에 한 번 “문화부”란 부서 명칭을 가진 것 이외에는 문화공보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불안정하게 불려지고 있는 것도 그 한 증거다. 문화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일, 정부기구나 사회단체가 공적으로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일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 인정받기와 관련하여 사회발전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문화적 권리가 사회적 권리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와서 다행히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조짐은 보인다. 우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런 관심의 증가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라고 하는, 문화 문제를 화두로 삼는 비판적 인문사회

과학의 한 조류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영향력을 쌓아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적으로 확산된 데서도 확인된다. 이 학문방식은 대중매체의 보급 확대에 따른 대중문화의 영향력 증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산업의 확산, 뉴 미디어 출현, 도시화의 급진전, 유연적 축적과 함께 이루어진 이미지 산업의 비대화, 자본 회전의 가속화를 위한 문화적 장치들의 개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적 변동에 대한 지식사회의 반응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냉전구도가 와해된 것도 문화에 대한 태도들을 바꾼 중요한 요인이다. 냉전구도의 와해로 체제의 우위를 비교할 필요성이 훨씬 줄어들었고, 경제 개발을 위해 문화를 회생시켜도 된다고 하는 냉전적 사고와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사회 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문화를 경제적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문화산업론과 같은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가 지난 창조적 능력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문화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생태론이 대안적 문명론으로 등장한 것 또한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들어와서 개별 국가나 각 국의 시민사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채택한, 경제성장을 기축으로 한 사회발전 전략에 대해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이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부안의 핵폐기장, 부산의 천성산, 군산의 새만금 등 엄청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개발을 강행하려는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지율 스님의 단식투쟁으로 대변되는, 개발주의에 대한 저항 역시 그 힘을 키워가고 있다.

이상 언급한 일련의 변화는 사회발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새로운 발전 모델은 압축적 근대화 또는 경제 중심의 발전 모델 대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이런 생태론적 발전 모델이 문화적 접근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회를 생태계로 파악하게 되면 전통문화,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창조성 등을 파괴하는 각종 개발을 제동을 걸고 발전을 삶의 의미와 가치, 모습을 존중하고 가꾸는 문제와 연관짓는 태도와 노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이윤 창출만을 노리며 사회생태계와 그 자원의 보살핌을 외면하는 경제적 접근과는 당연히 구분된다. 경제적 접근이 폴라니가 □□거대한 변환□□에서 지적한 대로 사회적 안전망을 파괴하여 삶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다면, 문화적 접근은 삶의 질에 대한 배려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생태계의 보존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가 내놓은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이라는 보고서가 발전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 보고서는 발전에 관한 두 가지 시각, 즉 경제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이 있다고 하고, 전자는 “발전이란 경제적 성장의 한 과정, 즉 생산과 생산성, 일인당 수입의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때로는 이러한 성장의 확산된 혜택)”이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발전이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문화적 관점은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의 관점으로서 “이 인간 발전의 시각(좁은 의미의 경제 발전과 대조되는)은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문화적 조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견해는 같은 해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에 대한 유럽특별조사단이 유럽회의에 제출한 정책 보고서에도 나온다. “인간에게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문화다. 비판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감을 지닌 종별적으로 인간적, 이성적 존재를 만드는 것이 문화다. 문화를 통해 인간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질문하고, 지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작품들을 창작한다.”⁸⁾

5.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

발전과 개발의 “문화적 대안”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함을, 그리고 문화적 권리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수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국내에서는 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아직도 너무 낮다. 아마 문화적 권리가 사회적 권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적 권리가 사회적 권리임을 알게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문화적 권리는 왜 사회적 권리인가? 문화적 권리는 1960년대에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으로써 보편적 권리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때 문화적 권리가 국제규약 A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국제규약 B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즉 B 규약에 포함된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는 다른 함의를 지닌 권리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규약과 B 규약에 담긴 권리들은 서로 어떤 차이가

8)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Mexico City, 1982), Final Report. Unesco, Paris, 1982.

있는가? A 규약의 권리가 사회적 권리라면 B 규약의 권리라는 정치적 권리라는 점이다. 그런데 사회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후자의 경우 권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 정의되는 반면, 전자의 경우에는 긍정적, 적극적 형태를 띤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로 전근대적 권력이 행사하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점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서구의 시민사회가 절대왕정의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시민적 권리가 자유시민의 권력을 만들어낸 (정치적) 자유주의의 부상에서 나온 인권의 개념이라면, A 규약에서 언급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는 자유주의가 지배적 세력으로 부상한 뒤 노동자계급, 여성, 소수자 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인권 개념에 해당한다. 경제적 권리의 주로 노동을 할 권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권리의 복지를 누릴 권리,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인간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 규약에 포함된 권리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서 문화적 권리를 사회적 권리와 구분하는 것은 문화적 권리가 사회적 권리에 속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는 일이 된다. 언뜻 보면 A 규약이 문화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와 구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사회적’이라는 말은 꼭 복지 등의 구체적인 분야만을 포괄하지 않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기술적 차원 등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봐야 하며, 이런 점에서 사회적 권리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문화적 권리와 구분되는 인권의 한 범주를 구성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A 규약에서 말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물론이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도 모두 포괄하는 총칭적 권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그 역사와 지향에 있어서 구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B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정치적 권리로, A 규약에 포함된 권리들을 사회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편리해 보인다.

문화적 권리는 따라서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일원이다.⁹⁾ 하지만 다른 사회적 권리들과 문화적 권리의 차이는 무엇인가? 위에서 이해한 바로 문화는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가치나 복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9) 물론 문화적 권리가 여기서 설명한 대로 사회적 권리라고 하여 정치적 권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국회의사당에서 캐주얼을 입을 권리는 문화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권리를 어느 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 권리는 사회적 권리이기도 하다.

다. 따라서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거나 삶의 모습을 가꾸는 사회적 권리일 것이며, 이에 따라서 문화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삶을 가꿀 수 있는 사회적 공공성, 기반, 사회적 자유 등이 제공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예컨대 예술이나 다른 문화적 성과물을 감상하고 예술을 포함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문화적 활동을 하기 위해 조성한 공공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문화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생산수단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문화적 삶을 스스로 꾸릴 주권을 행사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오늘 한국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적 권리는 과연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외국인노동자, 청소년, 노인, 장애자, 동성애자 등 우리 사회의 주체들은 어떤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과 외국인노동자, 청소년과 노인에게 문화적 권리는 그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해야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혹자는 먹고사는 것이 급해서, 혹자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과거사 진상 규명이 급해서, 혹자는 생태환경 파괴 저지가 급해서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모두 ‘금강산식후경’의 태도로 문화와 문화적 권리를 바라보는 태도다. 그러나 이제 이런 태도는 지양할 때가 되었다. 아직도 “문화적 권리”는 우리사회에서 생소한 권리 범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편향된 사회발전의 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지 못하고, 삶의 거친 결을 다듬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한국인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그뿐이겠는가. 우리가 문화적 권리 쟁취의 시급함을 잊고 있는 동안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미디어센터, 노동자문화센터, 문화원, 문화회관, 향교 등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공공문화기반시설이 우리의 삶과는 유리된 채 모두 다른 이익과 권력과 욕망을 지닌 사람들의 손안에 놀아날 것이다. 이를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사이에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노인 등은 모두 시장에서 문화를 구입해야 하는 문화소비자로 전락해야 하며, 가뜩이나 얇은 주머니 속으로 더 깊숙이 손을 집어넣을 능력이 없으면 이들에게 문화는 ‘나의 삶’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화적 권리 쟁취를 외면할 경우 사회운동은 실로 중대한 과제 하나를 방기하는 꼴이 된다. 사회운동이 문화적 권리를 쟁취하는 데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적 권리를 쟁취하려면 문화적 권리가 중요한 사회적 권리임을 인식, 인정하고, 그 중요성만큼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발제문 2

세계를 향한 고독한 외침 : 이것이 기초예술이다

김형수 / 시인, 문학평론가

1. 정치 이야기

“문화의 세기!”라는 말처럼 식상한 구호는 없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역설하는 거의 모든 식자들이 10여 년 가까이 같은 구호를 외쳐왔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 냉전구조의 해체와 인터넷의 출현, 디지털 문명의 개화가 가져온 세기적 변화의 흐름은 과연 “질서는 결정론적 체계에서 우연복합적 체계로, 규칙은 지배의 원리에서 공생의 원리로, 조직은 서열중심의 위계체계에서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사회체계로, 규범은 집단중심의 사고 구조에서 개체 중심의 자율체계로, 커뮤니케이션은 일방향에서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로, 존재양식은 입자 형태에서 파동이 중시되는 사회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가 왜 문화의 세기여야 하는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다만 이 다이나믹한 변화의 물결에 부응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개혁!”을 외치다가 매번 변질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사실 개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과 의미가 처음부터 그렇게 선명한 것은 아니다.

개혁의 회살이 언제나 정치 개혁, 부패 청산, 경제 발전, 빈부격차 해소 따위를 겨냥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과연 시대적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한다. 적어도 문화의 세기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차떼기’와 같은 물가치 앞에서 소위 개혁적이라는 정치인들이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부피 척결’ 안에 무슨 가치지향이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일종의 범죄를 방지하자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가 개항과 외세 지배, 해방과 분단, 전국과 전쟁, 근대화와 민주화투쟁이라는 이중의 궤적을 그리며 펼쳐져 왔던 사실 앞에서 그처럼 지당한 말은 한 없이 무기력할 뿐이다. 우리 사회의 이중성은 가치와 물가치의 위치를 미구 뒤섞어 버렸다. 부패 속에는 ‘천박하지만 기적을 만드는 역동성’이 담겨 있고, ‘개발 독재, 관치 경제를 탈피한 결과’가 경제난을 놓기도 하며, 빈부 격차 속에 ‘민주주의와 사유재산의 권리’가 숨어 있다. 이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의지도 막상 개혁 과정에 접어들어 현실의 마술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과잉 진단과 과잉 처방의 프로그램에 나포되어서 헤어나지 못한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처방이 숲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낡은 기계를 새 기계로 바꾼다고 공장이 반드시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정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된 데에는 너무도 자명한 이유가 있다. 새로운 개념과 발상이 주어지지 않는 시스템적 기능주의는 진정한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만일 개혁이 절차나 제도의 손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 사건이기보다 창조성 지속성이 살아 있는 문화적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언어들은 아무런 아포리즘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인간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언어로서 책임소재에 관한 불투명성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 주체들의 의지나 진실을 담보할 수 없는 용어들이 어떻게 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인가? 통치의 문화적 차원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린 이 건조하기 그지없는 정치적 계몽주의는 국민대중의 문화적 에너지를 오히려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렇게 보면 정치에게 있어서 “문화의 세기”는 다분히 상품의 발견에 의한 것이다. 가령 금세기에 들어서 문화는 생존을 위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의 범주 밖에서 일상적으로 향유되고 소비되는 수동적인 범주를 넘어 제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주도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떠올랐다. 영화, TV, 휴대전화 등 각종 미디어와 디지털화 된 콘텐츠 등은 문화적 소비품이면서 동시에 주요한 생산의 영역을 이루는 자원이 되었다. 자본이라는 개념을 물질적 토대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문화적 자원을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경제적 자

본의 권력은 사실상 문화적 재생산의 장을 통해서만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상징하듯이 경제에서도 이제 팔고 사는 것은 물질 그 자체라기보다는 상징과 기호이다.

그래서 오늘도 정치는 외치고 있다. 문화도 상품이다! 우리는 문화강국을 꿈꾼다! 한국정치의 이 같은 문화관이 예술에게 가한 횡포의 무게를 적시한다면 당사자들은 놀랄 것이다. 생존의 위협 앞에 방조된 아녀자들의 일부가 매춘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정치·경제인들이 찬양하는 ‘문화의 세기’를 맞아 한국예술의 일부도 사실상 자신의 육체를 시장에 내놓았다.

2 문화 이야기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문화의 세기를 가로지르고 있다. 지금이 왜 문화의 세기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거리에 운집한 사람들이다. 문명사적 전환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가 달라진 폭은 크다. 붉은 악마와 촛불시위는 이미 상징의 수준을 넘었다. 21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시민들은 굉장히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출하고, 파괴적이지 않게 자기를 소통하며 표현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적인 범주의 억압에서 풀어주면서 자유로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탈권위적이고 탈중심적이며 다중적이고 여러 개의 중심들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소통은 자연스럽게 어떤 가치지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개인에게 갇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면서 곧 해방인 축제의 기능까지도 수행한다.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존재확인이면서 그것들이 주는 감격과 감동을 통해 지역주의도 세대간 차별도 빈부의 격차도 넘어서서 한꺼번에 용해하여 끝내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도 없애 버린다. 그야말로 구성원 하나하나를 파편화시키고 사인(私人)화시키는 도시적, 정신분열증적, 자폐적인 것을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경제·사회를 뒤흔드는 위력을 우리는 벌써 여러 차례 경험했다. “문화의 세기!”는 이렇게 우리 곁에 와 있다.

이 같은 변화를 가져온 물적 토대는 크게 두 가지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오락을 포함한 예술, 학문, 스포츠 등 소위 문화 장르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진 데서 비롯되었고, 다른 하나는 삶의 스타일, 관습, 패턴 등이 변화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두 요인에 의해 중앙집중화 된 국민국가의 권력에 억눌렸던 다양한 생활문화들이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제주의적 정치, 군사, 경제적 체계에 눌려 지냈던 다양한 문화들이 고개를 드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문화가 자신의 자율성을 문화영역 안에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여 급기야 다른 영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해버린 상태이다. 정치도 생산자 집단(자본가와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었던 산업사회적 방식에서 일상생활인들의 구체적인 이슈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어감으로써 급속히 문화화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문화적 관점이다. 문화적 관점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문화적 조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말한다. 굳이 개혁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개혁정부가 할일은 숭고한 개인들이 내면에 소지한 삶의 가치를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그를 위해 이제 정치, 경제, 사회와 구분되는 기능주의적 문화개념을 넘어서 정치 경제의 기반인 삶의 질을 토대로 문화를 재개념화해야 한다.

문화의 세기를 위한 새로운 인식 틀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개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선진국 모델들이다. 그로 인해 현재 문화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용어는 지난날의 정치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말만큼이나 남용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 모델을 일방적으로 이식, 적용, 재편하려는 공학적 접근의 한계는 명확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처한 문화적 상황을 단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은 당인리 발전소이다. 일찍이 한강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때 그곳이 겨우 정선의 <양화진도>가 그려진 자리이며 절두산 성지의 전사(前史)가 있다는 것쯤은 아무런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 그런 고려를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개발독재의 위력 앞에서 어떤 발언도 묵살되었을 게 뻔하다. '한강의 기적'은 스명을 다했고 이후의 대안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모든 개발전략에 문화적 가치가 담겨야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 시대의 상징물이 '문화의 세기'의 상징물로 대체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예술적 동력이 솟구치는 문화발전소로 변환시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로서 당대 문화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 할 것이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환경, 난개발의 문제지구이다. 이것이 은유하는 바는 크다. 세계문화사적 지형 속에서 '한국적 모델'은 새로운 '아시아 모델' 혹은 21세기적 모델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문화체계는 아직도 근대적인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정의로운 문화체계를 가진 사회'를 모델로 할 만한 물적 토대가 우리에게 있는가? 둘째, 한 시대의 미적 준거 틀은 지배자의 용모이다. 근대의 지배자를 준거로 한 모델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정체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유럽의 틀은 오히려 낡

은 모델에 속한다.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또 하나의 유행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문화경제학적 접근이다. 여기서는 문화적 가치의 물질화가 시도된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 요소(관계, 신념, 가치, 동기들이 거미줄처럼 얹혀 있는 복합체로서의 문화)가 배제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의 하나가 전략이다. 이는 소설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식이나 경로를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만큼이나 처량한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 구조물의 구성이 시장의 간섭에 시달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전략이란 객체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태도이다. 객체는 나의 작용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다. 작가는 전략가의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다. 조금 낭만적이기는 하지만, 작가는 우선적으로 자기의 내적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김우창 <문화과 세계시장>) 전략이 필요한 것은 타자들 사이의 기본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술이 모두 투쟁적으로 사회적 재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이다.

3. 예술 이야기

그래서 제기해 보는 것이 생태학적 발상이다. 문화를 시스템과 기능으로 이해하는 경우와 생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가령 이렇게 비유해볼 수 있다. 서울에서 한강의 탄생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거슬러 오르고 오르면 필시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검룡소와 만나게 되어 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검룡소의 물줄기에 앞선 또 다른 물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이 없는 물줄기인자라 연중 6개월 이상을 흐르지 못한다. 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함은 물론이다. 강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선가 샘솟아 나오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히 생명체를 닮아 있다. 최초의 물줄기가 걷는 모습은 줄을 맞추지 못하는 유치원생들을 연상시킨다. 그러다가 다른 물줄기들을 만나면서 점점 굽어지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한강의 상류라면 골지천이 개울을 만나 임계천이 되고, 임계천이 오대천을 만나 조양강이 되며, 이것이 다시 동강이 되었다가 서강을 만나 남한강, 또 북한강을 만나 한강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은 마치 예술의 여러 장르를 은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발원지에서 갓 솟아나온 예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다 문명화된 매체들의 출현에 의해 늘 새로운 장르들을 탄생시킨다. 여기서 신개체에 의존하는 장르일수록 시장

의 적응력이 큰 지배적 장르 군(群)을 형성하고 발원지에 속하는 매체일수록 문제적인 장르로 남는다. 그것은 마치 “사람은 서울로 올라가고 강물은 서울로 떠내려간다!”는 말 같은 모순을 놓으면서 중요성과 선호도를 뒤바꾸어 놓는다. 서울사람들은 하류에 있는 자신들을 위하여 영월, 정선 등 상류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겪는다는(더럽히지 않을 책임이 있다)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 경우 생산자 중심의 관리에서 소비자 중심의 관리로 전환된다면 부도덕한 정책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숲과 도시를 살리는 것은 강이다. 문화의 숲 그리고 문화의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의 강을 예술이라 부르는 것은 맞는 것일까? 그렇다. 생각해 보면 개인들이 결합되는 형태가 문화를 놓는다. 가령,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을 꽃이라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듯이 내가 규정되는 것은 타자에 의해서다. 자화상은 타자를 발견했을 때 출현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정체, 특성, 개성이란 타자의 눈을 필요로 한다. 나는 타자에 의해 발견됨으로서 ‘나’일 수 있다. 크리스티나의 말대로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투사된 자기애”인 것이다. 세계를 가득 채운 개인 하나하나의 고독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여기서이다. 그리고 그 개인이 퍼붓는 ‘세계에 대한 고독한 외침’이 최초로 사회화되는 형태를 우리는 예술이라 한다.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 조형으로 이루어진 시각예술, 무대에 얹혀지는 공연예술 등은 세계에 대한 고독한 외침들 중에서도 특히 시원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 시원의 영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혼탁한 문명의 악육강식에서 살아남기(제도화되기)란 쉬운 노릇이 아니다. 예술이 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한 제도 안에서 지배적 현상이 되려면 불가피하게 ‘고독한 외침’이기보다 ‘세속의 즐거움’으로 선호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술은 ‘시장실패’를 전제로 창조된다. 아니,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태어난다. 그럼에도 시대가 만일 진정한 예술을 갖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적 물의는 언제나 ‘모자람’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 즉 ‘궁핍’이 아니라 ‘불의’에서 나온다. ‘예술적 위엄’의 크기가 계량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거래관계를 통해 ‘불의’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한 사회적 조절을 전담하는 것이 정치적 또 행정일 것이다. 예술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이다. 이는 중요한 ‘태도’이지만 사실 천박하게 활용될 소지가 너무도 많다. ‘예술계’라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위해 광범한 문화생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문화라는 생물이 한국에서 영위되는 상태와 그로 인해 ‘파급되는 가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초예술의 존재방식을 밝히고 기초예

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사(여기에서는 기초예술이 경제자본화되는 경로, 정치자본화되는 경로, 사회자본화 되는 경로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와 함께 기초예술의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가 문화산업화되는 경로일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오랫동안 순수예술이라 부르던 문화적 인프라를 기초예술이라 부르게 되었다. 당대 문화의 기반이요 근거라는 의미에서였다. 작금의 현실은 제조업과 향락 산업 간의 소득불균형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문화적 정의의 구현’이다. 문화적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사회에서 인력이 지배적 장르에만 편중되고 문제적 장르는 회피하는 현실은 극복되지 않는다. 문학의 위기가 어떻게 문화의 위기인지, 연극의 위기가 왜 영화의 위기이며 회화의 위기가 만화·애니메이션의 위기인지 문화의 세기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에 대한 균형들이 무너져 지금의 한국처럼 기초예술 내에서 조차 장르 연대가 붕괴된 경우를 일컬어 문화 생태계의 균간이 파괴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 거장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숲이 없는데 어떻게 맹수가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문화적 권리 관련 해외 선언 및 조약

(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2001) : 전문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관련한 1966년의 두 국제 규약처럼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충실향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가 승인한 다른 국제 규약에 유념하고,

유네스코 현장 서문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하며,

다른 목적보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 현장 제1조도 상기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며,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 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소망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문화와 문명 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해,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와 포함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

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 진다. 이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 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써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 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춰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국제연대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유통의 불균형에 직면해, 모든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내·외적으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서 받은 위임과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 (a) 여러 정부간 기구의 발전 전략에 이 선언문이 표명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한다.
- (b)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념과 목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국제 정부간·비정부 간 기구·시민 사회·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과 토론장을 제공한다.
- (c) 능력이 둉는 한, 이 다양성 선언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준 설정·인식 제고·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
- (d) 이 선언문에 첨부된 주요 행동 계획의 실천을 촉진한다.

<첨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특히, 아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제법적 기회를 명백히 고려하고 특히, 국가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 발전과 정책 수립의 효과에 대한 연관성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문화 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심화시키며,
2. 문화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는 인식 증진 모델 및 협력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개념과 아울러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 기준, 실천의 개념을 향상하며,
3.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의 참여와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과 실천의 교류를 강화하며,
4. 인권의 핵심 부분으로서 문화권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5.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창조·배포를 지원하며,
6. 가능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 모국어를 존중하고 -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고, 유년기부터 여러 언어를 학습하도록 장려하며,
7.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 인식을 증진하고, 이런 목적에서 교과 과정 구성과 교사교육을 향상하며,

8. 지식의 소통과 전달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보호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관점에서 적정한 전통적 교육 방법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도록 하며,
9. 교육 훈련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도구로서 컴퓨터 사용법(digital literacy)을 알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10.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방된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11. 관련 유엔 체제와 긴밀히 협조해 발전도상국가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정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자생적 문화 상품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보급하고 발전도상국이 전 세계 교육·문화·과학 정보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보호·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해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가 양질의 시청각 상품 개발에 기여하도록 특히, 이러한 상품을 배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도록 육성하며,
13. 특히, 구전 문화 유산과 무형 문화 유산을 포함한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 유통을 퇴치하며,
14. 전통 지식 특히,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또 환경 보호와 자연 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전통 지식의 공헌을 인정하고, 현대 과학과 지역 지식의 상승 작용을 촉진하며,
15. 창작자·예술가·연구자·과학자·지식인들의 활동성과 국제 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 관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보존, 확장하도록 노력하며,
16. 현대적 창의성의 개발과 창의적 작업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따라 문화를 누릴 공공의 권리를 지지하며,
17.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문화 산업의 출현 혹은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 설비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며, 생존력 있는 지역 시장의 출현을 육성하고, 이러한 국가들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과 국제 유통 네트워크에 배포되도록 도우며,
18. 이 선언문에 담겨진 원리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운영 지원 협정 그리고/혹은 적절한 규정 체계를 각 국가에 부과된 국제적 의무에 합당하도록 개발하며,
19.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민 사회를 적극 참여케 하며,
20. 민간 부문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촉진하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대화 창구를 수립한다.

회원국은 이 행동 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유네스코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고려할 것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상승 효과를 확대하려는 시각을 갖고 유엔 기구, 기타 다른 정부간 단체, 비정부단체와 협조할 것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2)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과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12. 16. 채택)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접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4)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서명일 1950. 11. 4)

제10조 (표현의 자유)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5) 미주인권협약 (채택일 1969. 11. 22)

제13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

-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의 형태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위의 조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가 사전검열을 받지 아니하나, 사후적 책임부과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또는
 -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6)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협장 (채택일 1981. 6. 27.)

제22조

- 모든 인민은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동등하게 향유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개발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7) 아시아 인권 협장 (1998)

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 생명권은 한 인간이 의미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물질적 정신적 조건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한 인간의 의미있는 삶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차원에 토대를 둔다. 아시아적 전통은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몰고 오는 압력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급속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문화적 가치는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문화적 가치는 자부심과 안전의 원천이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아시아에는 그들의 문화가 위협을 받고 무시받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들이 많다. 따라서 아시아의 국민과 정부는 자신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어온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야 한다.
- 아시아 문화가 갖는 다양성은 인권의 보편성과 대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처럼 인간의 보편적 규범을 풍부하게 해준다. 동시에 우리 아시아인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에 위배되는 문화적 특징들을 없애나가야 한다. 우리는 기부장적 전통에 근거한 낡은 가족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여러 문화적 전통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가족 규범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성적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종교 교리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신분이나 인종, 직업, 출신 여타의 것들에 기초하는 인간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각각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상호 관용과 상호 협력과 연관된 모든 가치들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집단이나 강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시키는 관행들을 중지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적 또는 민족적인 연대를 강화시켜야 한다.
- 독실한 종교인이 많은 아시아에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특히 중요하다. 종교는 빈곤과 억압 하에서 안락과 위안의 원천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1차적 정체성을 종교에서 찾는다. 그러나 종교적 근본주의는 분열과 분규의 원인이기도 하다. 종교적 관용은 개종의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는데 필수적이다.

(8) 문화 다양성 및 세계화에 관한 실무단에 의한 국제 문화 다양성 협약 초안 (2003. 7. 29.)

서문

본 협약에 대한 조인 당사국은, 인권선언문 및,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1996년 국제 서약 등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법적 조약에서 표방하고 있는 인권 및 기본 자유의 적용을 단호히 할 것을 서약하며, 사회의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선언문의 27조 및,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UN 국제 서약의 15조에 집약된 원칙에 준하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1966년 파리에서 채택된 국제 문화 협력 원칙에 대한 UNESCO 선언문 조항, 특히 각 문화는 위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는 존중 및 보존되어야 한다고 기술한 1항을 회고하며, 2001년 11월 2일 UNESCO가 채택한 문화 다양성에 관한 선언문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며, 한편으로는 국내적인 문화 개발 과정 및 문화 및 언어적 표현의 보존 및 함양 과정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의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모든 문화에 대한 수용 필요성을 의식하며, 문화 다양성이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물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 요소이며 또한 문명 간 대화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상고하며, 법규의 자국 내 적용에 있어 최대한의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의 특수 상황을 이해하며, 정체성 형성 및 사회 결집에 있어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인식하며, 고유 지식 및 전통 문화 표현과 무형 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특수한 필요성을 인지하며, 문화 간 교류 및 상호 번영의 잠재적 근원인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다양성을 보존 및 진작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조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원칙, 특히 다중 매체론이 민주주의 및 문화 다양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문화 다양성 보존 및 진작을 위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수행 권한을 인식 및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며,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국제 규정 및 원칙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을 확장해 나갈 것을 결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참고자료 2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요약, 문화사회연구소,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 문화권(Right to Culture) 국가행동계획(NAP) 수립의 의의

- 문화권 연구는 인간의 삶의 가치 중에서 문화적 권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인권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데 필요.
- 문화권은 인간의 감수성과 창조성의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인권 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됨.
- 문화권은 시민들의 문화적 삶에 있어 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다지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

2 문화권의 정의

- 문화권이란 용어는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Culture)나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로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시도한 학술적 연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문화 전체를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정의라 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문화영역들에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의 사례들을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1970년대 말 인권의 개념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SCR)로 구분되면서 문화권의 범주가 논의되기 시작함.
- 문화권이란 용어는 1980년대 인권정책이 발전하면서 영역별 인권정책의 개발과 연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주로 각 국민-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와 국민-국가 내 소수민족이나 종족들의 언어와 관습, 문화유산을 보

호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 논의되었음.

- 문화권이란 개념이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긴 했지만, 이미 1948년 「세계인권선언」(제27조)부터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음. 이후 197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9조)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강조하였고, 이러한 권리 는 1992년 「소수 국가 종족 종교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에서도 재확인.
- 국가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는 유네스코의 다양한 문화선언문과 현장에 내포되어 있다.
 - 1950년에 유네스코의 첫 출판물 「자유와 문화」는 「세계인권선언」의 6가지 문화적 범위에 대한 내용을 수렴. 「교육의 차별에 대항하는 약정」(1960)은 유네스코의 가장 초기 표준협약 중의 하나이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확고히 했음.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1978), 「국제 문화협력의 원칙에 대한 선언」(1966), 「문화적 삶에 많은 사람의 참여와 그에 대한 공헌에 대한 권리」(1976), 「문화정책에 관한 메시코시티 선언」(1982), 「세계 언어 권리선언」(1996), 「문화적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무허가 수입, 수출 및 교류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협약」(1970),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1972), 「도난당했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유산들에 대한 협약」(1995),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에 대한 권리」(1989), 「문화적 권리에 대한 초안 선언」(1997),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리」(1997),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국제 회의」(199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3)과 같은 선언문과 권리안의 역사 속에서 문화권의 이념과 내용들이 수렴되었음.
- 문화권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속에서도 문화적 권리가 오랜 역사적 토대와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화권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권리이면서 인권의 구체적인 실천영역(Halina Niec)
 - 문화권은 문화유산이나 구체적인 사람들의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대중들의 권리로 간주된다(Lyndel Prott).
 - 문화권은 문화적 발전을 요구할 권리. 집단성의 권리(Rodolfo Stavenhagen).
 - 문화권은 집단성의 권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권리(Elizabeth Evatt).
 - 문화권은 보편성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욕망(Alice Tay).
- 문화권의 주요 항목(Birgitta Leander)
 - ① 신체적 문화적 생존 권리, ② 문화공동체와 연계하고 동일화하는 권리, ③ 문화적 정체성을 존경할 권리, ④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⑤ 종교적 믿음과 실천에 대한 권리, ⑥ 의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교육의 선택과 학습에 관한 권리,

⑧ 문화 정책의 내실화에 참여할 권리, ⑨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창조할 권리, ⑩ 내적인 발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⑪ 사람들 스스로의 신체적 문화적인 환경에 관한 권리.

- 문화권은 문화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지만, 대체로 인간의 삶의 감성적인 발전을 위해 추구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자 특수한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권은 인간 활동의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장한다.
- 문화권은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양식들을 보호하고, 문화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문화다양성으로서의 문화권은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양식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

3. 문화권의 범주설정의 타당성

- 본 보고서에는 문화권의 범주를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으로 구분하였다.
- 이상과 같은 문화권의 4가지 범주가 학술적으로 공식 논의된 적은 없으나 나름대로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문화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나 유네스코에서의 문화권 정의, 이후 문화권에 대한 선언문이나 권리안을 검토하였을 때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의 범주는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문화자유권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 문화평등권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7조).”,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문화 공동체와 동일시를 하든 하나 이상의 문화 공동체와 동시에 동일시를 하든, 장애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을 수정할 수 있다(「유네스코 문화적 권리 선언 초안」).”
- 문화참여권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흔자이든 다

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있든 모든 사람은 장애 없이, 그 또는 그녀의 선택에 따른 활동을 통해서 자유롭게 문화적 삶에 접속하고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는다(「문화적 권리에 대한 선언 초안」).”,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 문화환경권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 선언」 제27조 제2항).”

4. 문화자유권의 쟁점사안

1)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관련법의 정비

○ 현황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윤리적 검열로부터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가 요청됨.
- 정치적 이념적 검열은 국가보안법이, 윤리적 검열은 청소년보호법(형법)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기 어려움.
- 인쇄출판, 영상물과 음반·게임 등에 대한 규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서 심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 기준이 다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사회적 논쟁이 있으나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는 기준의 심의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 대안

- 표현의 자유에 있어 사상과 이념을 검열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함.
- ‘청소년보호법’은 기존의 심의 기관에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면 되므로,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권, 교육권을 진흥할 수 있는 ‘청소년인권진흥법’으로 대체입법화.
- 영상물 및 문화매체에 대한 심의 기준은 기준보다 완화되어야 함.
- 영화진흥법 상 ‘제한상영가 등급’을 현실화할 수 있는 포르노그래피 성인영화전용관의 실질적인 도입이 추진되어야 함.

2) 정보통신 이용과 표현의 자유 신장

○ 현황

- 현재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온라인 표시방식(pics)로 인하여 사전에 정보접근이 차단될 여지가 있어 정보접근권을 침해
- 전자식 표시 의무화로 인해 음란물의 성격이 아닌 내용을 담은 사이트도 임의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음.
- 현재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서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사이트에 대한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은 과도한 규제임.
- 사회범죄 행위의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 감정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규제하는 경향이 있음
- 선거법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음.
- 패러디 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여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대안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전자식 표시 의무화조항의 삭제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자료 확인 자료제공’ 조항의 삭제나 무분별한 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의 마련
- 현행 ‘공직선거법’ 제 82조 제6항(인터넷 실명제) 폐지
- ‘공직선거법’ 제 7장 ‘선거운동’ 부분에서 인터넷 패러디에 대한 상대방 비방에 대한 포괄적 적용을 최소화

3) 학술사상출판의 보장

○ 현황

- 탈냉전, 탈이념의 시대에 학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임
- 냉전적인 사고관으로 인해 아직도 진보적인 학술사상을 담은 출판물에 대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안문제연구소’의 좌익이념서적 분류행위 및 역사교과서에 대한 냉전적인 사고관 등 학술사상 출판에 대한 자유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학술사상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음

○ 대안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학술사상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
- 공교육과 대학교육에서 학술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공론화 필요.

5. 문화평등권 쟁점시안

1) 양성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양성문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여성문화의 창작과 여성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
- 양성문화의 권리가 신장되기 위해서는 창작여건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매체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표현들이 줄어들어야 함.
- 문학예술과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양성문화를 평등하게 표현할 권리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대안

- 문화관광부의 창의한국을 위한 문화비전 정책에 '양성문화평등'을 위한 지원정책안이 마련되어 있음(창의적인 여성문화 전문 인력 확대, 여성의 문화 참여와 활동여건 강화 등)
- 여성문화센터나 지역 별 여성 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여성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강의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 '방송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통해서 양성차별적인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
- 학교 예체능 수업에서 양성문화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

2) 성적소수자 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 유해매체 고시 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 결정되었으나, 온라인상에서 동성애를 표현하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해 규제를 강화
-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침해가 존재함에도 법제도나 판례 등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지위를 명확히 인정하거나 구체적으로 편견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침이 없다.
- 성적소수자들을 다른 출판이나 제작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취급되고 있다.
-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무지개축제', '퀴어영화제' 등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

○ 대안

- 문학예술, 영화, 비디오, 만화 등의 창작 분야에서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
- 성적소수자들의 주제의식을 담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지원
-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창작센터나 예술가 아틀리에 등 조성 등에 대한 지원

3) 외국인 노동자 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적 차별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민속 둔화적 특성들에 대한 문화적 예외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 각 국의 언어, 관습, 풍습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함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밸굴을 통한 다문화주의적 사회구성의 원칙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들은 주로 한시적이고 복지지원 차원의 수준에서 그침

○ 대안

- 이주노동자들의 자녀 교육권을 위한 특별학교의 설립 추진
-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지원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속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지원프로그램 확대
- 외국인노동자종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통한 문화다원주의의 실현

4) 탈북자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남한사회의 부적응에 기인한 탈북자 범죄들의 발생과 가정불화·직업부적응·언어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

- 탈북자들의 정착프로그램들에 있어 직업훈련이나 소양교육은 있지만, 언어소통이나 일상 문화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
- 14세에서 20세에 이르는 탈북자 자녀 총 416명 대부분 무학력자이거나 학교중퇴자임.
-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있지만 자녀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교육권을 확대 하는 지원 안은 현저하게 부족.

○ 대안

- 탈북자들의 적응 훈련 기간인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 남한의 문화예술의 역사와 특성, 남한의 대중문화의 형성과 특성, 건축, 도시 공간, 라이프스타일, 음식 등등에 대한 일상문화와 관련된 적응 프로그램들을 상설화.
- 남북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험과 탐방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

5) 장애인 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접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영화관·공연장·체육시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
-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취미활동 등을 지원할만한 전문적인 시설이나 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

○ 대안

- 영화관, 극장을 포함한 공연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석 배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관람용 지원기구 설치.
- 다양한 문화정보 등에 대해 장애인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 정보 매뉴얼을 제작.
- 장애인들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건립 및 프로그램 지원
-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건립 추진 일정에 장애인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건립추진

6) 청소년문화평등권 실현

○ 현황

- '청소년보호법' 등 제정으로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권이 규제를 받고 있음.
- 영화, 비디오, 게임등급제 등의 심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접근권이 제한받고 있음.
- '청소년보호 논리'와 '청소년문화 권리'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볼 권리가 위축되는 상황임.
-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은 대부분 대중소비 문화산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문화 안에서 청소년들의 문화권리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
- 청소년들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청소년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문화격차가 심화
- 도심청소년과 농촌청소년들의 문화소비와 문화 활동 및 감상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안

- 출판물·영상물 등 문화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을 완화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차별을 해소
- 청소년 문화공연관람 시에 모든 분야에 할인제도 도입
- 청소년들의 문화가 공공문화 공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 인프라의 지원
- 청소년의 지역별 계층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지원
- 다음세대 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같은 민간사업을 지원
- 청소년 문화향수의 격차만이 아니라 문화생산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6. 문화참여권 쟁점사안

1) 문화교육을 위한 시민문화 참여권 실현

○ 현황

- 각 대학별로 '평생교육원'이 설립되고 있으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뒤따르고, 비용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나타남.
-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 연령, 계층,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시민들의 교육적 권리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함
- 대학입시 위주의 암기 입시교육으로 인해 공교육현장에서의 문화교육은 불가능한 실정.
- 수능 중심의 입시교육 부작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육투자에 비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 대안교육으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육 그룹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
- 영화, 미디어, 교육연극, 미술치료, 문학치료, 공연예술, 정보 분야 등에서 대안문화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제도들을 활성화할 필요

○ 대안

-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기관 확대'
- 평생교육 담당 공공기관과 시민자치 기관에 교육인력 강화
-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문화예술교육을 내실화를 위한 협약체결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수립과 행정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위원회와 지방문화예술교육진흥협의회 마련
- 대안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치단체의 지원체계마련
- 대안적인 문화교육의 학력인정 및 제도 개선

2) 문화행정 평가를 통한 시민문화 참여권 실현

○ 현황

- 문화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공공문화행정을 감시하는 예들이 많아지고 있음.
-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참여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시민단체들의 문화행정 감시 네트워크가 상설화되고 있는 상황.
- 현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문화 축제는 1000여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 대부분의 지역문화축제가 공공재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관주도형 축제여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상황
- 공공성을 가진 지역축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예산은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통한 참여 권리를 확대할 필요

○ 대안

- 시민들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위원회'의 심의위원회와 각 방송사의 심의위원회처럼, 지역의 문화행정이나 중요한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들을 발전시킴
-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시민들의 문화행정 참여와 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
- 지역문화축제 모니터링의 상설화
-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평가를 의무화

7. 문화환경권 쟁점사안

1) 주거생태환경 확보를 통한 문화환경권 실현

○ 현황

-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상에는 주거환경 침해요인을 추상적으로만 다루고 있어 '지구단위 법'과 같은 하위 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바뀌고 있지만, 주거문화와 공공성의 차원을 상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녹지는 주로 산의 형태를 이루며 산의 정상을 향해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어 '도시 공원법'에 1인당 공원면적을 늘이고 근린 녹지비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입출구가 골목길과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어 보행이 위험에 노출
- 보행통로가 끊임없이 상업공간으로 전용되어 보행을 차단
- 도로시설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디자인 전략이 필요함.
- 가로시설의 디자인 비용(design fee)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디자인이 제작으로 대치되고 있는 병폐가 있음.

○ 대안

- 도시 개발 및 개량에 문화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함.
-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
- 근린공원의 설계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제도가 필요함.
- 건축법상의 개별 건축의 성능에 관한 규제를 명시하도록 법률의 개정 추진
- 공공시설들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보행환경의 고려와 배려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개선안 마련
- 보행과 관련된 안전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입법 활동

2) 문화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문화환경권 실현

○ 현황

- 청계천복구사업, 고구려유적지(아차산) 훼손, 근대건축물파괴(한옥마을) 등 개발 위주의 정책에 따른 난개발로 문화 환경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
-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이나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에 대해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실정
- 난개발을 막고 주변의 문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환경영

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

- 지역의 문화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연구가 필요
- 문화 인프라, 문화자원, 문화정체성, 문화인력, 문화행정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의 현재적 수준과 개선과제들이 도출.

○ 대안

- 공해, 교통, 건설, 주거 분야를 포함해 공공미술, 축제, 문화유산, 문화시설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에서 문화적 권리의 보호하는 문화환경향평가제도의 법제화 추진
- 문화환경향평가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
- 광역시, 시군별로 단계적으로 문화지표 조사 실시의 의무화
- 지역의 문화지표 조사를 위한 기초설계

8. 결론

- 문화권 NAP 수립은 결국 우리 사회가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를 넘어서 문화민주주의로 가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권 NAP 수립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권리를 특수하면서도 보편적인 권리로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만큼 인권정책의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권의 실현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실현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